

# 아시아 주요지역의 투자코스트(I)

## I. 개요

## II. 아시아 주요 지역의 투자 인센티브

-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한국   | 5. 태국    | 9. 베트남   | 13. 스리랑카   |
| 2. 중국   | 6. 말레이시아 | 10. 미얀마  | 14. 방글라데시  |
| 3. 대만   | 7. 인도네시아 | 11. 인도   | 15. 우즈베키스탄 |
| 4. 싱가포르 | 8. 필리핀   | 12. 파키스탄 | 16. 일본     |

## III. 아시아 주요 지역의 투자 코스트

-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. 서울(한국) | 4. 대련(중국) | 7. 심천(중국) |
| 2. 북경(중국) | 5. 심양(중국) | 8. 홍콩(중국) |
| 3. 상해(중국) | 6. 중경(중국) |           |

## I. 개요

본 조사는 아시아 26개 도시의 임금, 지가, 사무소 임대료, 통신비, 공공요금, 등의 투자관련코스트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가능한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,

본 조사에는 인터넷접속요금, 일반용 및 업무용의 가스요금, 이자, 배당, 로얄티 송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.

## II. 아시아 주요 지역의 투자 인센티브

### 1. 한국

- ① 조세: 고도기술수반사업(436업종) 및 산업기술 서비스 사업(97종)의 합계 533업종에의 외국인 투자사업자, 외국인투자지역,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지에의 입주사업자, 자유무지역, 관세자유지역에의 입주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(당초 연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), 부동산취득세, 등록세,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감면제도가 있다.
- ② 국공유토지임대료: 상기 533업종, 외국인 투자지역,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규모에 비해 저렴하고 50년간 무료임대(갱신 가능)우대조치가 있다.
- ③ 관세: 외국인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, 특별소비세,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.

### 2. 중국

기업소득세율은 전국이 일률적으로 33%(국세 30%, 지방세 3%) 이나, 외자기업은 이하의 조건에 합치할 경우 세율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- ① 경제지구, 경제기술개발구, 하이테크구, 보세구의 생산기업 : 15%
- ② 연안경제개발구, 경제특구, 경제기술개발구가 있는 도시의 시가구의 생산 기업 : 24%
- ③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생산기업 : 「2免3減」(이익계상후 2년간 면세, 이후 3년간은 15%)를 적용
- ④ 연간생산액의 70%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: 5년간의 「2免3減」후에도 15%의 세율을 적용
- ⑤ 선진기술형기업 : 5년간의 「2免3減」후에도 3년간 15%의 세율을 적용
- ⑥ 이익을 재투자해 경영기간이 5년 이상 기업 : 납부완료한 기업소득세중 40%를 환부



◆ 북경

상기사항 외에도 북경경제개발구에서는 2001년 12월 1일 이후 임시용지 및 임시건설, 부동산교역절차비 등 98개 항목의 행정관리비용을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폐지하였다.

◆ 중경

상기사항 외에도 중경에서는 중서부지구에 대한 우대조치가 일정기간 적용된 후, 이후의 3년간의 기업소득세율을 15%로 하였다.

◆ 심천

상기사항 외에도 중국내 공장이 홍콩 등 역외기업과 내료가공무역거래를 행한 경우, 동 거래에 있어서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.

◆ 홍콩

외자의 우대조치 및 규제법률은 없고, 법제도상으로는 내외자의 차별이 없음. 관세, 부가가치세, 이자세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로,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세는 일률적으로 15~16%이다. 출자비율, 국산화비율, 자금조달, 송금, 재투자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제한은 없고, 제조업과 관련한 기계설비, 엔드유저가 소유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의 초기담보는 100% 인정된다.

3. 대만

산업의 하이테크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흥중요전략성산업에 대해 5년간의 법인세 면세조치가 있다.

4. 싱가포르

다양한 면세조치가 있으며, 일반적인 것으로는

- ① 하이테크기업에의 우대세제로 5~10년간의 법인세 면제, 서비스업도 대상
- ② 개발·확장투자에 대한 우대세제로 5~10년간의 13%의 법인세 경감
- ③ 신규설비투자액의 최대 50% 상당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
- ④ 연구개발(R&D) 투자에 대한 이중소득공제제도(배액손금산입)
- ⑤ 지역통괄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우대세율 10% 등

5. 태국

Zone마다 최대 8년간의 법인세 면제 및 기계수입 관세 면제가 있다. 단 법인세의 감면총액은 토지대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투자액분까지로, 장려업종은 1,126. 또한 5분야 51업종의 특별중요산업에 최대의 혜택을 주고 있다. 1,000만 바트를 초과하는 사업은 조업개시 2년내에 국제표준화기구(ISO) 등의 국제인증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, 일정조건의 외국기업의 지역총괄본사의 법인소득세는 10% 인하하고 있다.

6. 말레이시아

제조업에 대해서는 수출비율에 관계없이 2003년까지는 외국자본 100%의 출자가 가능하다(7업종 8분야는 제외). MSC(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드) 스테타스 취득기업은 10년간의 법인세 면세조치 혹은 100%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.

7. 인도네시아

법인세에 대한 우대조치는 특별히 없으나, 일본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세에 대한 경감조치는 있다.

인도네시아 동부지역(KTI) 및 경제통합개발지역(KAPET)에 소재하는 기업에는 우대조치가 있고, 금후 국내각지에 자유무역지역(FTZ)설치의 움직임도 있다.

◆ **바람섬**

- ① 수출용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로 VAT 면제, 수입세 면제
- ② 간소화된 수출절차로 통관은 약 4시간에 가능
- ③ 외화규제가 없어 외화의 소지 및 유출이 용이
- ④ 외자 100%가 가능. 설립이후 15년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개인·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하나, 그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.

**8. 필리핀**

필리핀의 투자유치기관으로는 투자위원회(BOI), 필리핀경제개발구청(PEZA), 수빅만도시개발청(SBMA), 크라크개발회사(CDC)가 있으며, BOI에서 최장 8년의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주어진다. PEZA, SBMA, CDC에서 BOI와 동일한 법인소득세 면제에 더하여, 수입자본재, 수입원재료의 관세, 기타 수수료의 면제 등이 인정된다.

**9. 베트남**

공업구내 제조업의 법인소득세는,

- ① 수출비율이 50% 미만이면 15%, 이익계상후 2년간 면세,
- ② 수출비율 50% 이상 80% 미만이면 15%, 이익계상후 2년간 면세, 이후 2년간은 5할 면세
- ③ 수출비율 80% 이상이면 10%, 이익계상후 4년간 면세, 이후 4년간은 5할 면세

**10. 미얀마**

- ① 상업생산 개시후 3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
- ② 공장건설에 드는 기계설비, 기계부품 등의 관세 또는 국내제세를 면제
- ③ 상업생산 개시후 3년내의 수입원재료는 관세 또는 국내제세를 면제
- ④ 제품수출에 의해 얻어진 이익의 상한 50%까지를 소득세 면제
- ⑤ 고정자산에의 가속도 감가상각 등

**II. 인도**

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고 있으나, 2010년 이후 이 법인세 면제는 폐지될 예정이다. 수출촉진을 위해 자본재(EPCG) 스킴을 운용중으로, 이는 수입자본재의 운임, 보험료 포함(CIF) 가격의 5배, 순외화 취득베이스에서 4배의 수출을 8년 이내에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본재수입에 대해 5%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.

**12. 파키스탄**

- ① 제조업에 대한 5년간의 법인세 면제
- ② 플랜트건설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지 않은 설비, 기계,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매상세가 면제된다.

**13. 스리랑카**

- ① 수출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, 자본재 및 중간재의 관세 감면
- ② 수출지향조건에는 5~20년의 법인세 면제, 또는 우대세율 적용
- ③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대상으로 설정 가능
- ④ 주식매각에 대한 소득세 면제
- ⑤ 이익, 배당, 자본의 자유로운 송금 가능

또한, 2000년 3월에 발효한 「인도·스리랑카 자유



무역협정」에 의해 무세로 인도향 수출이 가능하다.

#### 14. 방글라데시

- ① 조업개시후의 5년간 법인세 면제
- ② 공장신설, 기존공장의 보수, 근대화, 확장을 위한 기계설비의 수입관세(종 가세)는 100% 수출지향형기업은 무세, 수출가공구(EPZ) 진출의 경우는 조업개시후 10년간 현행소득세법하에서의 소득세 면제, 11년 이후는 수출 액에 근거한 소득세의 50% 환부.

#### 15. 우즈베키스탄

국가투자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

외자계 제조업, 수출현 또는 수입대체형의 외자계 제조업에 대한 이윤세의 공제 등.

#### 16. 일본

- ① 특정대내투자사업자에 대한 우대세제
- ② 특정대내투자사업자에의 채무보증제도
- ③ 일본정부투자은행에 의한 저리융자제도가 있으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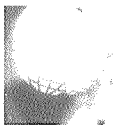
카나가와현은 산업입지촉진융자제도 외에 현내에서도 각종 조성, 융자, 세제면에서의 지원을 행하고 있다.

※ 본고는 일본무역진흥회(JETRO)에서 2002년 4월에 발행한 자료를 번역·편집한 것임.

### III. 아시아 주요 도시 및 지역의 투자 코스트 (2001.11 현재)

1. 서울 (한국)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1,284원)	비 고
입 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890~1,275	일본계 제조업 5개사 평균, 제수당 포함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962~1,301	상동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1,511~1,989	상동
	4.법정최저임금	369.63/월	2001.9~2002.8까지 적용 제수당 불포함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 + 변동상여)	기본급의 8.1개월분	일본계 제조업 5개사 평균 (497~1,643불/월)
	6.사회보장부담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국민건강보험 :(고),(피)표준보수월액의 1.7%</li> <li>● 고용보험:(고)임금총액의 0.9%, (피) 동0.5%</li> <li>● 국민연금:(고)(피)표준소득월급의 4.5%</li> </ul>	(고) : 고용자부담물  (피) : 피고용자부담물
	7.명목임금상승율 (%, '98→'99→2000)	▲2.5→12.1→8.0	한국재정경제부 월간경제동향(2001.6)
지가· 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-	현재 외국인전용산업단지는 모두 임대방식임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0.02	외국인전용산업단지 (전라북도)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34.50	서울시 종로구 영풍빌딩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1,690	신동아APT렌탈(약 102.45m <sup>2</sup> ) 광화문전화국
통 신 료	12.전화가설료	46.73	(보증금제→가입비제로 변경) 광화문전화국
	13.전화기본요금(월)	4.05	광화문전화국 (상기변경으로 기본요금상승)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1.96	한국통신(001)
	15.휴대전화가입료	52.95 (보험금10.12+가입비42.83)	SK텔레콤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기본요금: 12.46/월 통화료: 0.02/10초	상동
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접속요금: 7.79/월 통화요금: 0.03/277초	DACOM사 「천리안」 (56kbps)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설치비: 23.36 접속요금: 31.15/월	한국통신 「메가패스」 (ADSL, 654kbps)

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1,284원)	비 고
공 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0.04	한국전력공사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0.03	한국전력공사 월간1~50kWh사용시 (누진제적용)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월간 0~100㎡ : 0.62, 100초과~200㎡ : 0.70 200초과~1000㎡: 0.86, 1,000초과~ : 0.98	한국상수도사업본부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월간 0~30㎡: 0.25, 30초과~40㎡: 0.40 40초과~50㎡: 0.44, 50초과~ : 0.62	상동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0.29	서울도시가스(주)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0.39	상동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육상운임: 290, 해상운임: 740+114 (하역료, B/L 작성료)	공장→광양항→요코하마항 (육상운임은 VAT 10% 포함)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8,769	현대 아반테 XG (ABS, 에어컨, 에어백 부착)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97,352	벤츠S-320-L (2001.11~2002.5까지 시한적으로 특 별소비세 인하)
	28.레귤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0.96	S-OIL(구 쌍용정유)
세 제	29.법인소득세(기본세율)	●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: 16%, 1억원 초과: 28%	종로세무소(주민세 제외)
	30.개인소득세(최고세율)	● 과세소득 1천만원 이하: 10%, 8천만원 초과: 40%	상동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10%	상동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10%	종로세무소(주민세 포함)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25%이상의 법인주주: 10%, 기타: 15%	상동
	34.로열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10%	상동

2. 북경 (중국)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임 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152	중국 일본상공회의소 기업부회에 의한 2001.10 시점의 급여조사내역으로, 기본급, 각종수당, 보너스 등의 합산 수취액이며, 회답한 제조업 27개사의 평균으로, 노동자는 고졸신입. 엔지니어는 대졸신입임.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353	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426	
	4.법정최저임금	52.60/월	2001.7 개정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 + 변동상여)	년1~2회 지급(30개사) 기본급의 1~2개월분	상기조사시, 상여에 대해 회답한 40개사를 대상으로 함.
	6.사회보장부담율	● 고용자: 29.5% ● 피고용자: 9.5%	-
	7.명목임금상승율 (%, '98→'99→2000)	11.5→12.2→14.1	북경 2001통계연감
지가· 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73	북경경제기술개발구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3.62~6.04	북경경제기술개발구 표준공장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30.00~60.00	관리비포함(월 약3.50달러/m <sup>2</sup> )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2,500~4,800	2LDK~3LDK(國貿大廈아파트)
통 신 료	12.전화가설료	28.39	북경시전신국
	13.전화기본요금(월)	4.23	상동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2.90	상동
	15.휴대전화가입료	9.67	상동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6.04/월	상동
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0.14~0.29	상동(1시간당)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11.96/월(40시간) 24.04/njf(100시간)	상동(ADSL, 512kbps)

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공 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0.05~0.07	북경시전력국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0.05	상동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상수: 0.29 하수: 0.10	북경시자래수공사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상수: 0.19 하수: 0.05	상동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천연가스: 0.22 석탄가스: 0.12	북경시연기공사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천연가스: 0.21 석탄가스: 0.11	상동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870	천지항→요코하마항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19,933	부강(시트로엔합작), 988EL 1587cc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63,912	아우디A6형(2800cc)
	28.레굴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0.35	93호 가솔린 법정가격
세 제	29.법인소득세 (기본세율)	33%	-
	30.개인소득세 (최고세율)	45%	-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17%	-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10%	-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0%	-
	34.로얄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10%	영업세 5% 부가가능성 있음.

3. 상해 (중국)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임 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190~279	일본계 5개사의 평균계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285~463	상동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434~907	상동
	4.법정최저임금	59.20/월	2001.9.1 개정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+ 변동상여)	기본급의 1~2.3개월분	-
	6.사회보장부담물	●고용자: 36.5% ●피고용자: 13.0%	-
	7.명목임금상승률 (%, '98→'99→2000)	4.1→24.5→7.4	상해통계연감(1999~2001)
지가· 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25	송강공업구 (50년간의 토지사용권)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-	월정임대차없음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1.00(日額)	경제기술개발구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2,150~4,000	상동
통 신 료	12.전화가설료	-	폐지
	13.전화기본요금(월)	4.23	중국전신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2.90	상동
	15.휴대전화가입료	-	폐지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6.04/월	상해이동통신유한책임공사
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0.14/시간	상해시전신공사 장도통신사업부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289.96/월	상해환구신식망로유한공사 (ADSL)

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0.07	송강공업구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0.07	상해시전력공사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0.15	송강공업구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0.11	상해시자래수시의 유한공사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1.06	송강공업구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0.11	상해연기시의 유한공사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700	상해항→요코하마항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15,102	뷰익(1600cc)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44,219	뷰익(2980cc)
	28.레굴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0.35	법정가격
세 제	29.법인소득세 (기본세율)	북경과 동일	-
	30.개인소득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상동	-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4.로얄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
4. 대련 (중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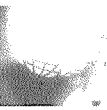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임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57~129	일본계제조업의인건비 조사에 의함.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72~279	상동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62~430	상동
	4.법정최저임금	37.45/월	대련시 노동국 2001.6.1 개정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 + 변동상여)	기본급의 1~4개월분	일본계제조업의 인건비조사에 의함.
	6.사회보장부담율	● 고용자: 21.5~30.0% ● 피고용자: 6.0~9.0%	상동
	7.명목임금상승율 (%, '98→'99→2000)	4.7→26.3→14.5	대련통계연감2001
지가·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42~46	대련공업단지개발관리유한공사 (50년간의 토지사용권)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0.20	대련경제기술개발구 (1년 임대외의 경우)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39.18	임무대하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1,812	박대대하 (2LDK, 95m <sup>2</sup> )
통신료	12.전화가설료	36.25	요녕성전신공사대련시분공사
	13.전화기본요금(월)	4.23	상동(업무용외의 경우)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2.90(심야대는 1.74)	상동
	15.휴대전화가입료	4.23	요녕이동통신유한책임공사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6.04/월	상동
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12.08/월	중국전신요녕성전신공사 (1개월 75시간까지)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1Mbps: 120.82/월 2Mbps: 217.47/월	상동(ADSL)

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공 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0.05	대련전업국(대련지구전가표)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0.05	상동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0.39	대련시공용국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0.28	상동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0.17	대련시매기공사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0.12	상동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855	공장→대요만항→요코하마항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23,058	산타나2000(1800cc)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43,591	뷰익(3000cc)
	28.레귤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0.32	법정가격
세 제	29.법인소득세 (기본세율)	북경과 동일	-
	30.개인소득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상동	-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4.로얄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
5. 심양 (중국)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임 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108~205	일본계제조업의 인건비조사에 의함.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149~260	상동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224~415	상동
	4.법정최저임금	38.66/월	심양시노동국 2001.11.6 개정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+변동상여)	기본급의 1~4개월분	일본계제조업의 인건비조사에 의함.
	6.사회보장부담율	●고용자: 33.5~34.5% ●피고용자: 9~11%	상동
	7.명목임금상승율 (%, '98→'99→2000)	5.0→7.0→7.3	심양통계연감2001
지가· 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26	심양경제기술개발구 (사용기한: 50년)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토지의 리스는 행하지 않음	심양경제기술개발구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20.14	심양주제주점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4,000	심양주제주점(53.4m <sup>2</sup> )
통 신 료	12.전화가설료	36.25	중국전신요녕성전신공사
	13.전화기본요금(월)	4.23	상동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2.90(심야대는 1.74)	상동
	15.휴대전화가입료	6.04	요녕이동통신유한책임공사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6.04/월	상동
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12.08/월	중국전신요녕성전신공사 (1개월 75시간까지)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338.29/월	상동 (ADSL, 1Mbps)

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0.05	심양시전업국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0.08	상동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0.19	심양시자래수공사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0.19	상동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0.29	심양시매기공사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0.29	상동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1,204	공장→대요만항→요코하마항 (육상운임은 VAT 10% 포함)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22,726	산타나2000(1800cc)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41,863	뷰익(3000cc)
	28.레콜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0.32	법정가격
세 제	29.법인소득세 (기본세율)	북경과 동일	-
	30.개인소득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상동	-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4.로열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
6. 중경 (중국)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임 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108~205	일본계기업 2개사의 청취에 의함.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149~260	상동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224~415	상동
	4.법정최저임금	38.66/월	2001.10.1 개정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 + 변동상여)	기본급의 1~4개월분	일본계기업 2개사의 청취에 의함.
	6.사회보장부담율	●고용자: 33.5~34.5% ●피고용자: 9~11%	상동
	7.명목임금상승율 (%, '98→'99→2000)	5.0→7.0→7.3	중경통계연감
지가· 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26	중경경제기술개발구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토지의 리스는 행하지 않음	월정임대차없음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20.14	중경중심부 오피스빌딩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4,000	별 4~5개의 호텔
통 신 료	12.전화가설료	36.25	중국전신집단중경시전신공사
	13.전화기본요금(월)	4.23	상동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2.90(심야대는 1.74)	상동
	15.휴대전화가입료	6.04	중국(중경)이동통신공사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6.04/월	상동
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12.08/월	중경시수거통신국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338.29/월	상동



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공 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0.05	중경경제기술개발구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0.05	상동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0.23	상동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0.20	상동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0.09	상동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0.13	상동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1,650	공장→중경항→요코하마항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17,398	산타나2000(1600cc)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36,003	뷰익(2500cc)
	28.레굴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0.31	중국석유판매공사중경지점
세 제	29.법인소득세 (기본세율)	북경과 동일	-
	30.개인소득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상동	-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4.로얄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
7. 심천 (중국)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임 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43~106	잔업대 등 각종수당을 포함. 일본계 제조업 4개사의 노동자, 엔지니어, 중간관리직의 최저, 최고치의 각사평균. 잔업대는 최저임금의 2배인 경우도 있음.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118~254	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341~719	
	4.법정최저임금	①53.16/월 ②69.35/월	①특구외 ②특구내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+변동상여)	기본급의 0.75~0.8개월분	-
	6.사회보장부담물	●고용자: 9.0% ●피고용자: 5~7%	좌는 심천시호적보유자. 우는 잠정거주자로 급여총액당의 징수율임
	7.명목임금상승률 (%, '98→'99→2000)	10.20→12.70→11.2	심천통계신식연감 (직공평균화폐임금지수신장률)
지가· 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14	일본계기업청취(특구외)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0.24	상동(특구내)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12.08~14.50	국제금융대학(관리비 포함)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362~967	특구내외각소, 약 85~100m <sup>2</sup>
통	12.전화가설료	①12.08 ②36.25	차이나텔레콤 ①공사불요 ②공사요
	13.전화기본요금(월)	①2.42 ②4.23	상동, ①일반주택 ②업무용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2.90	상동 (00:00~07:00은 40% 할인)
신	15.휴대전화가입료	-	광둥이동통신유한책임공사 (심천)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6.04/월	상동
료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초기요금: 12.08/월 접속요금: 12.08/월	차이나넷, 다이알업접속방식, 시간무제한, 전화요금은 별도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초기요금: 60.41 접속요금: 604.08~2,416.33/월	차이나넷, ADSL, 통신속도최고 2Mbps, 시간무제한, 통신정도에 따라 다름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8.277인민원)	비 고
공 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0.09~0.12	심천시공전국(업종, 사용량에 따라 다름)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0.09	상동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①0.23 ②0.29	심천자래수(집단)유한공사 ①공업용 ②상업용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①0.18 ②0.23	상동 ①사용량 30㎡ 미만 ②사용량 30㎡ 이상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1.57	심천연기집단공사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1.21	상동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1,226~1,277	포길항→홍콩항→요코하마항수송비, 홍콩에서의 핸드링 차지, 연료유 할 증의 합계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14,498	산타나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47,119	상해뷰익3.0
	28.레굴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0.33	기업청취(시내각소)
세 제	29.법인소득세 (기본세율)	북경과 동일	-
	30.개인소득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상동	-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	34.로얄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상동	-

8. 홍콩 (중국)

구분		코스트 (1달러 = 7.788홍콩달러)	비 고
임 금	1.노동자 (월급: 일반공)	981~3,217	잔업대 등 각종 수당 포함. 일본계제 조업 3개사의 노동자, 엔지니어, 중간 관리직의 최저·최고치의 각사 평균
	2.엔지니어 (월급: 중견근로자)	2,314~2,514	
	3.중간관리자 (월급: 부과장급)	2,342~4,467	
	4.법정최저임금	-	관계법령 없음
	5.상여지급액 (고정상여 + 변동상여)	기본급의 1~1.5개월분	고정상여 1~1.25개월 + 변동상여 0~0.5개월
	6.사회보장부담율	고용자 : 5.0% 비고용자 : 5.0%	급여의 10%를 법정강제퇴직적립금 (MPF) 으로서 매월적립(2000.12 이후)
	7.명목임금상승율 (%, '98→'99→2000)	5.2→▲0.8→0.5	NOMINA SALARY INDEX(A) 신장률 (홍콩통계월간)
지가· 사무소 임대료 등	8.공업단지 (토지구입가격, m <sup>2</sup> 당)	244	대포공업단지 2047.6까지의 토지사용료
	9.공업단지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-	대포공업단지는 렌탈없이 장기토지사용료만.
	10.사무소임대료 (월, m <sup>2</sup> 당)	30.69~62.79	金鐘부근의 오피스 빌딩 (중개업자 청취)
	11.주재원용주택임대료 (월)	2,183~4,622	태고성(3LDK, 74~111m <sup>2</sup> , 가구있음)
통 신 료	12.전화가설료	60.99	PCCW-HKT사
	13.전화기본요금(월)	①14.12, ②16.54	상동(기본요금어외는 무료) ①일반주택, ②업무용
	14.국제전화요금(3분)	①1.54, ②0.38	PCCW-HKT사 ①월~토 09:00~19:00 ②월~토 19:00~09:00 및 휴일
	15.휴대전화가입료	-	홍콩의 CSL사
	16.휴대전화기본통화료	33.38~106.57/월	상동, 통화무료시간 등에 따라 다름
	17.인터넷접속요금 (전화회선)	8.35/월	HKNeT사, 56kbps, 시간무제한, 초기 요금없음, PENTS차지, 0.15달러/시간
	18.인터넷접속요금 (브로드밴드)	①114.02/월(20인까지) ②462.25/월(50인까지)	HKNeT사, ADSL(기업용), 통신속도 최고 1.5Mbps, 시간무제한, 초기요 금: 449.41달러, PENTS차지 없음

구분		코스 (1달러 = 7.788홍콩달러)	비 고
공 공 요 금	19.업무용 전기요금 (kWh당)	월간 30kWh까지 : 3.84 30kWh이상 : 0.13/kWh	홍콩전등
	20.일반용 전기요금 (kWh당)	월간 20kWh까지 : 2.00 20kWh이상 : 0.10~0.14/kWh	상동, (월간 20kWh이상의 요금은 사 용량에 따라 다름)
	21.업무용 수도요금 (㎡당)	0.59~1.40	水務署(업종에 따라 다름)
	22.일반용 수도요금 (㎡당)	0.00~1.16	상동(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나뉨)
	23.업무용 가스요금 (㎡당)	0.77~6.10	산소, 질소, 아세틸렌, 수소에 따라 다 름. 대량이용자의 가격은 교섭에 의함
	24.일반용 가스요금 (㎡당)	월최저금액 : 2.57 2.57~2.70/MJ	홍콩중화매기유한공사 (MJ: 메가줄)
수 송	25.컨테이너수송 (40피트 컨테이너)	1,161~1,216	대포공업항→홍콩항→橫하마항 수송비, 홍콩에서의 핸들링차지, 연료 유 할증의 합계
자 동 차	26.승용차구입가격 (1500cc, 세단)	18,477	도요타 카로라
	27.대형승용차구입 (2500cc 이상, 세단)	64,188	도요타 크라운(3000cc)
	28.레귤러가솔린가격 (1리터당)	1.43	시내 주유소
세 제	29.법인소득세 (기본세율)	개인사업주소득세 : 15% 법인소득세 : 16%	-
	30.개인소득세 (최고세율)	2~17%	누진과세, 최고세율에 : 15%
	31.부가가치세 (표준세율)	0%	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, 알콜음료, 탄화수소오일, 담배, 기타 알콜제품에 는 물품세가 있음.
	32.이자송금과세 (최고세율)	-	-
	33.배당송금과세 (최고세율)	-	-
	34.로얄티송금과세 (최고세율)	개인 15%, 법인 16%	홍콩의 비거주자가 받는 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1.5%, 법인 1.6%임